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검 토 보 고

<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운영 관련 사항 규정>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31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가. 제정안의 필요성	3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7
2. 조문별 검토	9
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안 제2조)	9
나. 대학원(안 제9조)	12
다.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안 제10조 및 제11조)	15
라. 학교규칙 등(안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19
마. 부칙	2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11.

다. 회 부 일 : 2025.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체계적인 예술실기 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고등교육기관임. 한예중은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상위 20위권인 19위를 달성하여 아시아 전체 대학 중 1위를 차지하였음.

이와 같이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종학교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예술전문사 과정에 대한 석사·박사학위가 인정되지 않아 창의적 예술인재의 양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술영재 발굴 및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도모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예술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영재 발굴 및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다른 예술 대학 또는 학과와 협력하여 예술 관련 학술·학문·교육 연구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는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를 두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대학원을 둠(안 제8조 및 제9조).
- 라.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예술영재교육을 실시함(안 제15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가. 제정안의 필요성

- 동 제정안은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통한 세계 수준의 창조적인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2년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립되어, 30여 년간 음악·영상·무용·전통예술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 예술 인재 양성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해왔음. 특히 2025년 기준 QS 세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¹⁾ 공연예술 분야에서 세계 19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대학원 수준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1) QS 세계 대학 랭킹(QS World University Rankings)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 (QS), 1994년부터 세계 대학을 평가하여 매년 새로운 순위를 발표, 현재 ARWU(중국 상하이 자오퉁대학발행물)와 THE 세계 대학 랭킹(영국 The Times Higher Education[1]에서 발행하는 연간 고등 교육기관 평가)과 함께 3대 대학 랭킹(출처: 위키백과, 네이버)

- 이에 졸업생이 취업, 유학, 학위연계, 자격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해외 유학 수요 증가, 국제 공동학위 체결의 제약, 인재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제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석사·박사 과정을 포함한 대학원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문화예술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지난 제15대·제17대·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²⁾.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심사 당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³⁾.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본래 실기 중심의 예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석사·박사 학위과정 도입이

2)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률안 발의 현황]

국 회	법 률 안 명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안 일	심 사 결 과
제 15대	국립예술대학교설치법안	임채정의원 (152217)	1999.11. 2.	임기만료 폐기
제 17대	한국예술학교설치법안	우상호의원 (171343)	2005. 2. 3.	임기만료 폐기
제21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이채익의원 (13330)	2021.11.16.	임기만료 폐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박 정의원 (14682)	2022. 2. 7.	임기만료 폐기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윤덕의원 (17794)	2022.10.13.	임기만료 폐기

3) 2023.5.24.,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실기교육과 학위과정은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통문화대학교 등 유사 사례를 들어 석박사 운영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의견과, 반면 실기 중심의 운영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별도의 대학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 예술대학들과의 형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한예종의 경쟁력 강화가 타 대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으며 예술 현장과 해외 유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요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문체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전문사’ 학위가 국내외에서 석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졸업생들은 취업이나 해외 유학 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과 국제 공동학위 운영이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교육협력 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석·박사 학위 수여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대학원 운영이 추가적인 정원 확대나 예산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 계획된 대학원

과정은 기존 정원 내에서 운영되는 구조이므로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하고,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안 제2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및 혼란 방지를 위해 소재지 규정에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명시하도록 조정할 필요
- (안 제10조) 학생 정원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고등교육 정책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문체부장관의 승인 및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운영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변경하여 대응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 한편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속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의 정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학생 정원 관련 문체부 승인 및 교육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대학의 신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임.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총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적 및 설치 (제1조·제2조)	○ 예술영재 발굴 및 창의적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학교로 설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	○ 예술학교 관련 사항에 우선 적용되며, 고등교육 관련 법률을 준용
운영원칙 (제4조)	○ 「고등교육법」상 대학으로 간주 ○ 타 예술대학과 협력, 교육의 기회균등과 자율성 보장
총장 및 교직원 등 (제5조·제6조)	○ 총장은 교무총괄·교직원 감독·학생지도 및 학교 대표 ○ 총장은 문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교원·직원·조교 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도 둘 수 있음 ○ 교원 등 자격은 「고등교육법」 기준 적용
학교 규칙 (제7조)	○ 총장은 학칙 제정·개정 권한 보유 ○ 학칙 기재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각 원 및 대학원 (제8조·제9조)	○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 및 소속 학과 설치 ○ 각 원·학과에 장을 두며 교수·부교수·조교수 중 임명 ○ 대학원에는 석사·박사 학위 과정 설치, 학위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구분	주요 내용
입학정원 및 자격 (제10조~제12조)	○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에 따르며,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 대상자는 별도 정원 인정 ○ 입학자격은 일반학력 보유자 외 예술영재 및 외국인 가능 ○ 일반전형·특별전형으로 선발,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수업연한 및 학위 수여 (제13조·제14조)	○ 학사: 4년 또는 5년, 석사·박사: 2년 이상 ○ 졸업요건 충족 시 수업연한 단축 가능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수여 규정 명시
예술영재교육 및 예술연수과정 (제15조·제16조)	○ 예술영재를 위한 별도 교육과정 운영 ○ 학위와 무관한 예술연수과정 운영 가능
부속시설 및 교육 시설 지원 (제17조·제18조)	○ 연구시설·부속시설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조직·운영 규정 ○ 예술교육을 위해 타 기관의 시설 사용 요청 가능, 타 기관은 협조 의무
재정 지원, 시설 및 교원 배치 기준 (제19조·제20조)	○ 국가가 학교 운영경비 부담 및 장학금 지급 또는 학자금 융자 가능 ○ 시설·교원 확보, 해당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명칭 보호 및 과태료 (제21조·제22조)	○ 예술학교 외의 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칭 사용 금지 ○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칙(경과조치) (제1조~제6조)	○ 시행일: 공포 후 1년 경과 시 ○ 기존 재학생·졸업생·교직원·예술전문사과정에 대한 경과 조치 포함 ○ 기존 권리·의무의 승계

2. 조문별 검토

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안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2조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문체부장관 소속의 국립학교로서 설치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조(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둔다.

2) 검토사항

-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3조는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 제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교육부장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둬으로써 예술분야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예술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수 목적을 갖는 대학을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해 설치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특수목적 대학을 개별법률로 설치한 사례]

구분	대 학교	형태	근거법령	소관
1	경찰대학	소속기관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청
2	국군간호사관학교	소속기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3	국방대학교	소속기관	국방대학교 설치법	국방부
4	사관학교	소속기관	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5	육군3사관학교	소속기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6	합동군사대학교	소속기관	합동군사대학교령	국방부
7	한국농수산대학	소속기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농림축산식품부
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소속기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국가유산청
9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법인	한국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울산과학기술원 (UNIST)	법인	울산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광주과학기술원	법인	광주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법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분	대 학교	형태	근거법령	소관
13	과학기술연합 대학원대학교	부설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	법인	한국에너지공과 대학교법	산업통상 자원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소재지 선정 권한을 문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향후 학교 이전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3조(설치 등)제2항에서 예술학교의 소재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원대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에서 소재지를 정하고 있다는 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경우 부처간 협의, 정책적 중립성 유지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설치) ①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설립) ①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재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 시설 중 일부는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조(설치)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각급 학교의 교원양성, 교원의 재교육 및 교육연구기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교원대학교를 둔다.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나. 대학원(안 제9조)

- 안 제9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학원을 두고 석·박사 학위과정을 설치하되, 학위의 종류 및 대학원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9조(대학원) ① 예술교육을 더욱 심화시켜 창조적인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예술학교에 대학원을 둔다.
②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 학위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검토사항

-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 제2조 및 제3조는 예술학교에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과정에 상응하는 ‘예술사과정’과 이를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에 상응하는 ‘예술전문사과정’을 규정하고 있음⁵⁾.
-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종학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학사학위는 수여할 수 있으나 석사 및 박사학위는 수여할 수 없음.
- 이는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학에만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⁶⁾.

5)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2조(정의)

1. “예술사과정”이란 예술실기와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대학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예술전문사과정”이란 예술사과정을 심화시켜 고도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3. “예술실기연수과정”이란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하여 두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관할 아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예술학교”라 한다)를 두되, 교육부장관은 예술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한다.
② 예술학교의 소재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예술학교에 전문과정과 예술실기연수과정을 두며, 전문과정은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으로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 이러한 구조로 인해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 중인 ‘예술전문사과정’은 실질적으로 석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석사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졸업생은 박사과정 진학 제한, 공공기관 및 기업 취업 시 자격요건 미충족, 호봉 산정 불이익, 병역특례 제외, 해외 유학 시 정규학위로 인정되지 않아 입학 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제정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구성된 대학원을 설치하고, 학위의 종류와 대학원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운영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공동학위 프로그램 운영,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등 예술 교육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세계적인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29조(대학원)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교육여건과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59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국립 각종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상급 학위과정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의 학위 수여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6항과 제50조를 준용한다.

제35조(학위의 수여) ①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⑥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의 심화 과정(석박사학위 과정)이 필요하며, 학사 졸업생의 상위 과정 진학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대학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 학생정원 및 입학자격(안 제10조 및 제11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10조는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은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의 정원은 별도로 인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는 입학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상 학력 요건 외에도 예술영재 및 외국인 등에게 별도의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0조(학생의 정원) ①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가 각 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입학자격) ① 예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예술학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술학교의 각 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예술학교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 원 및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검토사항

-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제4항은 각 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⁷⁾. 이에 따라 안 제10조는 학생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령 간 위계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정원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예술영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학자격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면, 예술사과정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예술영재선발위원회에서 예술적 능력을 인정받아 추천된 자가 입학할 수 있으며, 예술전문사과정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가 입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7)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5조(각 과정) ① 예술사과정과 예술전문사과정에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원(이하 “각원”이라 한다)의 교과는 예술실기 전공과목 위주로 하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정은 총장이 정한다.

③ 국내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각원의 학과 및 학생 정원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예술실기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8)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0조(입학자격) ① 예술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

- 안 제11조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력 요건 외에도, ‘예술영재’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술학교 입학 자격을,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게는 각 원 및 대학원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예술인재 조기 발굴과 글로벌 인재 유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안 제11조와 현행 규정 모두 예술영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현행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은 ‘예술영재선발위원회’를 통한 구체적 선발 절차와 주체를 명시한 반면, 제정안은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사용하여 절차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제정안에서도 예술영재 선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 또는 학칙 위임 등을 통해 ‘예술영재선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 총정원 관리에 있어 교육부의 고등교육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정부의 거시적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학생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문체부장관의 승인 및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예술학교의 예술영재선발위원회가 예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 ② 예술전문사과정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학사학위 학력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외국의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임.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고, 현행 설치령과 같이 예술영재에 대해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나, 다만,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외국인에 대한 별도 입학자격 부여에 대해서는 선발 방식에 대한 논란과 특혜 시비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삭제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속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학의 정원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비수도권 대학 등도 교사, 교원 등 적정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증원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른 대학의 정원만을 교육여건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고려없이 대학의 자율에 따른 정원관리를 허용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고등교육법」 상 대학들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가 인구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학생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승인 및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라. 학교규칙 등(안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1) 제정안의 요지

- 안 제7조는 학칙의 제정·개정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제12조는 학생의 선발방법(일반전형·특별전형)을 명시하며, 제13조는 학사 및 대학원 과정의 수업연한 등을 정하고, 제15조는 예술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7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총장은 제11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그 밖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수업연한) ①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예술학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예술영재교육) ① 예술학교는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사항

- 안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각각 학칙 제정 절차, 학생 선발방법, 수업연한, 예술영재교육 운영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집행의 대응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학생 정원, 수업연한 등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서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의 연계 및 국가 교육정책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유사 입법례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항은 대통령령 수준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6조(학교규칙) ① 총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학생의 선발방법) ① 총장은 제10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업연한) ① 전통문화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학칙으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과 및 수업)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능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24조(학위과정 등) ① 한국에너지공대에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학기·수업일수·학과·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전문석사·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마.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 제1조는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으며,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종전 「고등교육법」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 지위, 재학생·졸업생, 교직원의 신분을 현행과 동일하게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는 기존에 예술전문사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종전 학교가 보유하던 권리와 의무를 본 법에 따른 예술학교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이 법에 따른 예술학교로 본다.

제3조(한국예술종합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한국예술종합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직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학력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라 예술전문사증
서를 수여받은 자는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
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
교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
교가 승계한다.

2) 검토사항

- 안 부칙은 제정안 시행에 따른 제도적 연속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일, 학교의 법적 지위, 재학생·졸업생·교직원
의 신분,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먼저, 안 부칙 제1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일을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여, 하위 법령 정비와 대학원
설치를 위한 교육여건 확보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제정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타당한 조
치로 판단됨.
- 다음, 안 부칙 제2조부터 제4조에 대해 현행 「한국예술종합학
교 설치령」에 따른 학교·재학생·교직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예술전문사 학력을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재학생·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 및 경력 활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다만, 안 제4조의 교직원 관련 경과조치의 경우 제정안 본문 제6조에서 “교직원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조문 제목을 “교직원 등”으로 수정하고 내용 또한 본문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부칙 제5조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석사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들에 대한 학력 인정 여부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에 대한 학력 인정의 연속성을 명확히 보장하기 위해, 부칙 제5조를 “예술 전문사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의 학력 인정에 대해서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2조의⁹⁾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이는 설치령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받은 자에게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함으

9)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로써, 관련 법령 폐지 이후에도 법적 공백 없이 학력 인정의 안정성과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1

관련 사업 및 추진현황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2년	(국고) 63,374 (자체) 24,929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641명), 비전임교원(겸임교원 307명, 객원교수 18명, 외국인 초빙교수 5명) 임용·관리 ○K-Arts 브랜드 국내외 홍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국내외 74개 대회 참가, 193회 수상
'23년	(국고) 74,594 (자체) 24,379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737명), 비전임교원(겸임교원 294명, 객원교수 19명, 외국인 초빙교수 8명) 임용·관리 ○K-Arts 브랜드 국내외 홍보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국내외 177개 대회 참가, 313회 수상
'24년	(국고) 74,044 (자체) 29,251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641명), 비전임교원(겸임교원 307명, 객원교수 18명, 외국인 초빙교수 5명) 임용·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국내외 128개 대회 참가, 286회 수상

참고 2

해외 예술학교 석박사 과정 사례

분야	대학 별 (미국)	과정	대학 별 (유럽 및 아시아)	과정
음악원	줄리어드음대	○BM(4년), MM(2년), DMA(4년)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콘서바토리)	○실기, 이론전공 : Bachelor+Master(4-5년) Doctor(3년)
	맨해튼음대	○BM(4년), MM(2년), DMA(4년)	베를린예술대학교	○실기전공 : Master(2년) Konzertexamen(2년) ○이론전공 : Master(2년) Doctor(3년)
	뉴잉글랜드음악원 (콘서바토리)	○BM(4년), MM(2년), DMA(4년)	뮌헨음악대학	○실기, 이론전공 : Master(2년) Meisterklasse(2년)
	이스트만 음대	○BM(4년), MM(2년), DMA(4년)	빈국립음대	○실기, 이론전공 : Master(2년) Postgraduate(1년)
연극원	Yale 연극학교	○MA(2년), MFA(3년), DFA(5년)	호주 빅토리아 예술대학교(VCA)	○MDA(3년), Ph.D(4년)
	캘리포니아예술학교 (CalArts)	○MFA(3년)	네덜란드 우트레히트예술학교	○MA
	줄리아드예술학교 (Julliard School)	○MFA(4년/연기)	영국 왕립화술과연극학교 (CSSD)	○MA(1년), MFA(2년)
	위스콘신대학교	○MA(2년), MFA(3년), PhD	영국 왕립연극예술아카데미 (RADA)	○MA(1년)
	컬럼비아대학교	○MFA(3년) ○Ph.D(6년)	런던음악연극예술 아카데미 (LAMDA)	○MA(1년), MFA(2년)
영상원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A(16개월)/MFA(3년) /PhD(5-6년)	싱가포르 라살 예술대	○MA(2년)
	American Film Institute(Los Angeles, CA)	○M.F.A(2년)	VGIK (러시아 국립영화대학)	○석사과정 (학부부터 5년과정) ○박사과정
	NYU(Tisch School of New York University)	○M.A.(2년) ○M.F.A.(3년)	체코 FAMU	○MA(2년)
	Chapman University(CA, USA)	○M.F.A.(2년)	Beijing Film Academy	○M.A. / M.F.A / PhD (4년 이상)
	CalArts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M.A.(2년)	Sydney Film School (Waterloo, Australia)	○M.M.I(1-1.5년)
	Columbia University	○M.F.A (3년)	La Fémis (Paris, France)	○M.F.A(4년) / PhD(3년)
	UCLA	○MA(1-3년)/MFA(2년 /3년)/PhD(5년)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M.A.S(2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School of the Arts	○M.A(2년)	Concordia University (캐나다 몬트리올)	○M.F.A(3년)

분야	대 학 별 (미국)	과 정	대 학 별 (유럽 및 아시아)	과정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M.F.A(2년)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NFTS), London	○ M.A(2년)
	Stanford University	○ M.F.A(2년)	City University of Hong Kong's School of Creative Media	○ MA(Full Time: 1년 / Part-time: 2년) / MFA (2년) / PhD(4년)
			Lodz Film School (폴란드 우쯔대학교)	○ B.A(3년) Post- graduate (1-2년) / M.A(2년) / PhD(4년)
무 연 원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 MFA과정(2년)	Trinity Laban Conservatoire of Music and Dance (영국)	○ MPhil/PhD (2년)
	New York University (미국)	○ MFA (1년)	University of Roehampton (영국)	○ MA/PGDip/PGCert (2년)
			University of Surrey (영국)	○ PhD (2년)
			De Montfort University (영국)	○ MFA (1년)
			Amsterdam Art University (네덜란드)	○ MA (2년)
			Universität der Künste Berlin (독일)	○ MA (2년)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스위스)	○ PhD (4년)
			Uniarts Helsinki (핀란드)	○ MA (2년)
			Stockholm University of Arts (스웨덴)	○ PhD (4년)
			Conservatoire National Supé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프랑스)	○ MA (2년)
			Victoria University (호주)	○ MA(1년)

분야	대학 별 (미국)	과정	대학 별 (유럽 및 아시아)	과정
미술원	Crambrook Academy of Arts (미국)	○ MFA (2년)	Royal Academy of Art (영국)	○ Graduate Diploma(1년), MA, MRes(2년), MPhil, PhD(4년)
	Chicago Arts Institute (미국)	○ MFA (2년)	Chelsea College of Art (영국)	○ Graduate Diploma (1년), MA(2년), MPhil, Ph.D(4년)
			파리국립장식미술학교	○ 전문화과정

참고 3

관련 통계

□ 한국예술종합학교 정현원 현황

① 교육공무원 현황

2024. 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직 급 별 내 역			비고 (행정조교)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총 계	157	136	78	33	20	16/16
총 장	1	1	1	-	-	
원 장	6	6	6	-	-	
전임교원	150	129	76	33	20	
음 악 원(원장포함)	-	22	15	6	4	
연 극 원(원장포함)	-	30	17	8	4	
영 상 원(원장포함)	-	28	20	4	2	
무 용 원(원장포함)	-	17	9	5	3	
미 술 원(원장포함)	-	22	12	6	5	
전통예술원(원장포함)	-	16	10	4	2	

② 일반직 공무원현황

2024.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일반직									
				고위 공무원단		4급		4.5급		5급		6급 이하	
합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103	93	1	1	2	2	1	4	10	7	89	79
교 학 처	교무과	21	19	-	-	1	1	-	-	1	1	19	17
	입학관리과	3	3	-	-	-	-	-	-	1	1	2	2
	학생과	6	7	-	-	-	-	-	1	1	-	5	6
기 획 처	기획과	6	4	-	-	-	-	1	1	1	1	4	2
	대외협력과	19	16	-	-	-	-	-	1	2	1	17	14
사 무 국	총무과	30	30	1	1	1	1	-	-	2	2	26	26
	시설관리과	18	14	-	-	-	-	-	1	2	1	16	12

③ 비공무원 현황

2024.12.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대학회계직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합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36	35	314	295	-	11

□ 학생 정원 현황

2024. 12. 31. 기준(단위 : 명)

구 분	음악원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	협동과정	합계
예술사	532	340	420	240	380	340	0	2,252
전문사	252	116	147	100	140	76	24	855
합 계	784	456	567	340	520	416	24	3,107

□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2024. 12. 31. 기준(단위 : 명)

□ 예술사

원 별	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532	532	106	638
연극원	340	372	120	492
영상원	420	532	184	716
무용원	240	306	58	364
미술원	380	482	92	574
전통예술원	340	339	78	417
협동과정	0	0	0	0
합 계	2,252	2,563	638	3,201

□ 전문사

원 별	정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252	209	52	261
연극원	116	172	68	240
영상원	147	198	59	257
무용원	100	148	34	182
미술원	140	138	46	184
전통예술원	76	135	38	173
협동과정	24	26	5	31
합 계	855	1,026	302	1,328

□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구 분	정 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예술사	2,252	2,563	638	3,201
전문사	855	1,026	302	1,328
합 계	3,107	3,589	940	4,529

□ 원별 학생 정·현원 및 재학생 현황

구 분	정 원	재학생	휴학생	재적생
음악원	784	741	158	899
연극원	456	544	188	732
영상원	567	730	243	973
무용원	340	454	92	546
미술원	520	620	138	758
전통예술원	416	474	116	590
협동과정	24	26	5	31
합 계	3,107	3,589	940	4,529

□ 한국예술종합학교 시설현황

2025. 1. 1. 기준 (단위 : m²)

구 분		부 지	건물면적	비 고
계		144,085	120,595	
석관동 캠퍼스	본관교사	83,211	67,179	본부동(학교본부, 예술정보관), 강의동, 극장동, 연희실습장, 학생회관, 무대제작실습장, 천장관, 창조관 등
	별관교사	44,638	28,811	미술원, 전통예술원, 전통음악실습장, 전통문화연수동, 무용·연희실습장, 송추공방동, 철공·목공실, 미술원전문사동, 정문초소 등
서초동 캠퍼스		15,919	19,001	음악원, 무용원
대학로 캠퍼스			4,072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 등
K-Arts House		317	1,469	기숙사
초빙교수 주택			63	무용원 2채

참고4

관련 공청회 개최현황

세미나명	주최(개최일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에 관한 공청회	문화관광위원회('05.3.24.)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관한 공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3.29.)